

부록



1.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4. 심의대상 매체현황

5. 색인

1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7. 2. 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에 따라 선거기사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기본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선거기사심의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1.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2. 선거기사의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의무
3.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

제3조(심의고려사항)

위원회는 제2조의 심의기본원칙 위반 여부를 심의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정도와 비중
2. 해당 매체의 발행부수, 발행주기, 배포범위 등에 따른 영향력
3. 선거기사의 게재시기
4. 언론사의 심의기준 반복 위반 여부
5.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언론사의 의도성 여부

제2장 일반 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2조제1호의 공정성을 위반한 선거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주장·공약 등을 일방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기사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기사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일방적, 의도적으로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또는 기고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사

제5조(형평성)

제2조제1호의 형평성을 위반한 선거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 또는 사실과 다르게 변형한 기사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기사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사

제6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조제2호의 객관성 및 사실 보도의무를 위반한 선거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기사
2.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사실과 의견을 명백히 구별하지 않은 기사
3.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 발언을 취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하거나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기사
4.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기사
5.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기사
6.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거나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기사
7.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기사
8.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기사
9.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사

제7조(정치적 중립성)

제2조제3호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선거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념,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 정당한 근거 없이 비난 또는 비방하거나 미화하는 기사
2. 그 밖에 위 1호에 준하는 기사

제3장 세부 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여론조사 관련보도로써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전 6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까지 실시한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2.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또는 축소·과장하여 해설한 경우
3.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4. 여론조사결과를 조사의 전제여건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경우
5.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의 형태로 보도하면서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경우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9조(인터뷰 및 인용기사)

인터뷰 및 인용기사 관련보도로써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포함한 개인이나 정당을 포함한 단체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게재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및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를 덧붙여 보도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견해나 반응을 묻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상반된 견해를 균형 있게 보도하지 않은 경우
3.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를 왜곡 또는 변형시켜 편집, 게재한 경우 또는 출처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10조(사진게재)

선거와 관련한 사진 또는 이미지 기사에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법의 규정에 의한 광고와 관련해서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 또는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하지 않은 경우
2. 사진 또는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상을 유발하기 위하여 원본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한 경우
3. 선거운동 관련 사진보도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참가 인원이나 내용 등을 왜곡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특집기획기사, 칼럼 및 기고 등에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까지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기사를 게재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하거나 감정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닌 개인 또는 언론사 내·외부 필진의 의견(칼럼, 기고 등을 포함한다)을 게재한 경우
3.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경우
2.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게재한 경우. 단,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칭, 성명, 경력, 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4장 결 정

제13조(제재결정 등)

① 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삭 제> (2017. 2. 13.)
2. 정정보도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반론보도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에 대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반론의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결정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의사실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경고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주의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언론사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권고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언론사에 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시정요구 등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으며, 부적법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규칙

[개정 2017. 2. 3. 규칙 제2017- 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따라 설치하는 선거기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선거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각종 규칙을 준용한다.

제 2 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심의위원회 직무)

- ①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선거기사 심의
 2. 선거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선거기사 관련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정요구사항 심의
 3.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의 심의
- ②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하여 공표한다.

제4조(심의위원의 추천 및 위촉)

- ① 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하 “추천정당”이라 한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하 “추천단체”라 한다)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의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추천을 의뢰할 경우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 ④ 심의위원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하여 위촉한다. 다만, 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피추천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장 등)

- ① 심의위원회에 정·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언론인단체 및 정당이 추천한 사람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 ③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임기 등)

- ① 심의위원의 임기는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설치되는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으로 한다.
- ② 심의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조에 따라 그 후임자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선거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의결정족수)

-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 소집 등)

-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심의위원장 또는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 ② 심의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하고 이를 차기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서면의결에 대하여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심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심의 및 시정요구

제12조(심의안건)

- ①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간행물등의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 ② 심의위원은 선거기사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3조(정기간행물등 제출 요구)

-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정기간행물등의 제출 의무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2회 이상 그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과태료부과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정요구)

- ① 후보자가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선거기사 전문과 시정요구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정을 요구한 후보자는 해당 언론사가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의결)

-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삭제 <2017. 2. 3.>
 2.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3. 경고결정문 게재

4. 주의사실 게재
5.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②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이 이유 없이 명백할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부적법할 경우에는 이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진술)

- ①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결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견진술 요구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④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 등은 서면,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의견진술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 등)

- 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정기간행물등에 대한 제15조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선거법 및 이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 ②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을 해당 언론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불이행 사실을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시정요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언론중재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서면의결을 위하여 서면,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결에 필요한 자료를 심의위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의견을 취합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제재조치의 공개)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제재조치에 관하여 제재대상 언론사명과 해당 결정내용 등을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재심청구)

- ① 제15조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해당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청구는 한 번만 할 수 있다.
- ②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이하 “재심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재심청구인(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및 관련 당사자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재심청구인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반론보도청구

제19조(반론보도청구회부)

- ① 후보자,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언론사가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그 취지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반론보도청구 회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 ③ 심의위원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제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반론보도청구의 양측 당사자 등에게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는 구두, 팩시밀리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반론보도청구회부의 결정 및 통보)

- ①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심의하는 경우, 사실을 조사하고, 청구인과 언론사 등 양측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출석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을 거부할 경우 해당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결정문은 참석 심의위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 ④ 반론보도청구회부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이행여부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⑤ 선거기사관련 반론보도청구사건 심의절차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언론조정중재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특례절차)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22조(사무처리 등)

심의위원회의 의사, 관리, 홍보 등의 사무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다.

제23조(예산)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부 칙 <규칙 제2017-1호>

이 규칙은 2017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본인승낙서

성명	한글	생년월일	직업
	한자		
주소			전화번호
			e-mail
학력			
경력			

위 본인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승낙자 ○ ○ ○ (인)

인론중재위원회 귀중

주 : 학력 및 경력은 주요사항 2~3개 정도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시 정 요 구 서				
시정요구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E-mail	
시정요구 대상	⑥ 언론사명 (매체명)		⑦ 대표자 성명	
	⑧ 주소 또는 소재지		⑨ 보도일자 및 지면	
	⑩ 보도 내용 (별첨 가능)		⑪ 전화번호	
시정요구 사항 (별지작성 가능)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6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정요구인 : (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보도기사 전문			수수료	
			없 음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법률 제14556호, 2017.2.8. 일부개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④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등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⑥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⑦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 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

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등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등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④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 ⑤ 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⑦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 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②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④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인터넷언론사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내용·크기·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⑦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 ③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⑥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선거여론조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⑦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등록 처리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조치
 3. 제8조의9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등 처리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2.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3.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만,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제외한다.
 4.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5.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⑨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관할 여론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2.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해당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⑩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⑪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직원”으로, “선거범죄” 또는 “범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로 본다.

⑫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⑭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3. 삭제 <2002.3.7.>

② 삭제 <2004.3.12.>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제34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하고,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 ⑤ 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선거의 연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제196조(선거의 연기)의 규정에 의한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각각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재투표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 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염전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 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 ①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제69조(신문광고)

①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 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1. 대통령선거

총 7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3. 시·도지사선거

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때 100만까지마다 1회를 더한다.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담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첨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첨부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 ④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체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제13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⑥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 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⑦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제6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 ⑩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 ⑪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⑫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2.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3.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요금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부담한다.

- ⑭ 여론조사의 신고, 이의신청,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8조의3(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와 공표제한 등)

- ①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한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 ①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한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소속정당, 이의제기자,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한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 제기서와 제출받은 서류·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집·수정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이의제기서의 양식, 제출 서류·자료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 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제137조(정당·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 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에서 “일간신문 등”이라 한다)에 의한 정당·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그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선거기간 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

- ####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연기된 선거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20회 이내

3. 제2호외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10회 이내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등66의 광고 1회의 규격은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 ③ 제69조제1항 후단(광고횟수를 말한다)·제2항·제5항·제8항 및 제9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등의 광고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정당”으로 본다.

제178조(개표의 진행)

- ③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 ①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 ②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
 2.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에 해당되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0일전까지 확정된 보궐선거 등
- ③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그 선거일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 ④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전단에 따른 선거일(제203조제3항에 따라 보궐선거등을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을 말한다) 전 30일 후부터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35조제2항제1호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 ① 제9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82조의7제5항·제94조·제95조제1항·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같은 조 제11항제1호를 위반하여 지시·권유·유도한 자,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2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제8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재조치 등
 2. 제8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
 3.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4. 제8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 거. 제108조의3을 위반하여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 너.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0의2.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자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8제10항에 따른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통보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8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자
 3. 제108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등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여론조사 의뢰자를 말한다.
 4. 제108조제8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⑩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인 때에는 제57조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와 제9항에 따른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⑪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자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과태료를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3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심의대상 매체현황

※ 총 419개 매체

- 일간지 130개(중앙 24, 지역 103, 기타 3)
- 주간지 263개(종합 41, 지역 222)
- 월간지 17개
- 뉴스통신 9개

1. 일간지 130개

중앙 일간지 (24)	종합일간지(11)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제지(7)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서울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스포츠지(6)	스포츠경향,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스포츠월드,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지역 일간지 (103)	서울(19)	내외일보, 매일일보, 새한일보, 서울매일, 서울일보, 선경일보, 시민일보, 신아일보, 아시아경제, 아시아글로벌, 아시아일보, 아시아타임즈, 아시아투데이, 에너지경제, 이데일리, 이투데이, 일간투데이, 한성일보, 한민일보
	경기/인천 (19)	경기도민일보, 경기매일,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도신문, 경인매일, 경인일보, 경인종합일보, 기호일보, 대한투데이, 도민일보, 수도권일보, 수도일보, 시대일보, 인천일보, 일간경기, 전국매일, 중부일보, 현대일보
	충북(6)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매일, 충청일보, 충청타임즈
	대전/충남(7)	금강일보, 대전일보, 중도일보, 중앙매일, 충남일보, 충청신문, 충청투데이,
	강원(2)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부산/울산(7)	경상일보, 국제신문, 부산일보, 울산매일, 울산신문, 울산제일일보, 일간리더스경제
	대구/경북(11)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신문, 경북일보, 경안일보, 대경일보, 대구광역신문, 대구신문, 대구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경남(7)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경남신문, 경남일보, 일간뉴스경남, 창원일보, 한남일보
	광주/전남(11)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광주타임즈, 남도일보, 무등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호남매일, 호남신문, 호남일보
	전북(9)	새만금신문, 새전북신문, 전라일보, 전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전북매일신문, 전북중앙신문, 전주일보
제주(5)	제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주신보, 한라일보	
기타 일간지(3)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농민신문

2. 주간지 : 263개

중앙 주간지 (41)	잡지(15)	뉴스위크, 뉴시스아이즈, 매경이코노미, 미래한국, 시사뉴스, 시사오늘, 시사인, 시사저널,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리뷰, 주간경향, 주간동아, 주간조선, 한겨레21, CNB저널
	타블로이드 (12)	뉴스포스트, 미디어워치, 민주신문, 사건의내막, 월요신문, 일요서울, 일요시사, 일요신문, 주간한국, 주간현대, 중앙선데이, 토요경제
	기타주간지 (14)	글로벌이코노믹, 금융경제, 기자협회보, 뉴스웨이, 대한금융신문, 마케팅신문, 미디어오늘, 변형신문, 서울파이낸스, 아시아에너지경제, 여성신문, 월드경제, 이뉴스투데이, 현대경제신문
지역 주간지 (222)	서울(32)	강남내일신문, 강서양천일보, 경동신문, 관악신문, 구로오늘, 구로타임즈, 금천in, 노원신문, 뉴스타겟, 동대문신문, 동작포커스, 마포신문, 마포타임즈,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신문, 서대문자치신문, 서울동부신문, 서울송파신문, 서초구민신문, 성북신문, 세계로컬뉴스, 양천신문, 영등포신문, 영등포투데이, 은평시민신문, 은평신문, 종로저널, 주간 서부신문, 주간 시정신문,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중랑신문
	경기(29)	가평타임즈, 고양신문, 과천문화신문, 군포신문, 김포신문, 남양주신문, 더 피플, 반월신문, 부천신문, 북경기신문, 시사인천, 안산정론신문, 안산타임스, 안양신문, 안양광역신문, 여주신문, 연수신문, 용인신문, 자치안성, 전국도민신문, 주간 고양인, 투데이안산, 파주저널, 평안신문, 평택시민신문, 포천뉴스, 포천신문, 포천일보, 화성신문
	대전/충남(17)	공주신문, 놀미신문, 뉴스서천, 당진투데이, 보령신문, 서산타임즈, 서천신문, 시사충청, 주간 금산신문, 주간 당진시대, 주간 예산신문, 주간 온양신문, 주간 온주신문, 천안신문, 충남신문, 태안미래신문, 홍성신문
	충북(12)	괴산중평자치신문, 보은사람들, 보은신문, 영동신문, 옥천신문, 음성뉴스, 음성신문, 제천신문, 증평신문, 진천시사신문, 충주신문, 충청리뷰
	강원(14)	강릉신문, 강원고성신문, 강원리뷰, 강원북부신문, 강원신문, 강원종합복지신문, 삼척동해신문, 영월신문, 원주투데이, 주간 설악신문, 철원신문, 태백신문, 홍천신문, 횡성신문
	부산/울산(4)	부울경인, 울산저널, 울산종합신문, 정관타임스
	대구/경북(28)	경북자치신문, 경북중부신문, 경산신문, 경산자치신문, 경주시민신문, 경주신문, 고령신문, 군위신문, 군위팔공신문, 김천신문, 뉴스상주, 대구푸른신문, 상주시민신문, 상주신문, 성주자치신문, 안동신문, 영덕신문, 영주시민신문, 영주신문, 영천시민신문, 예천신문, 울진마당, 울진신문, 의성문소신문, 의성신문, 청도신문, 칠곡신문, 팔공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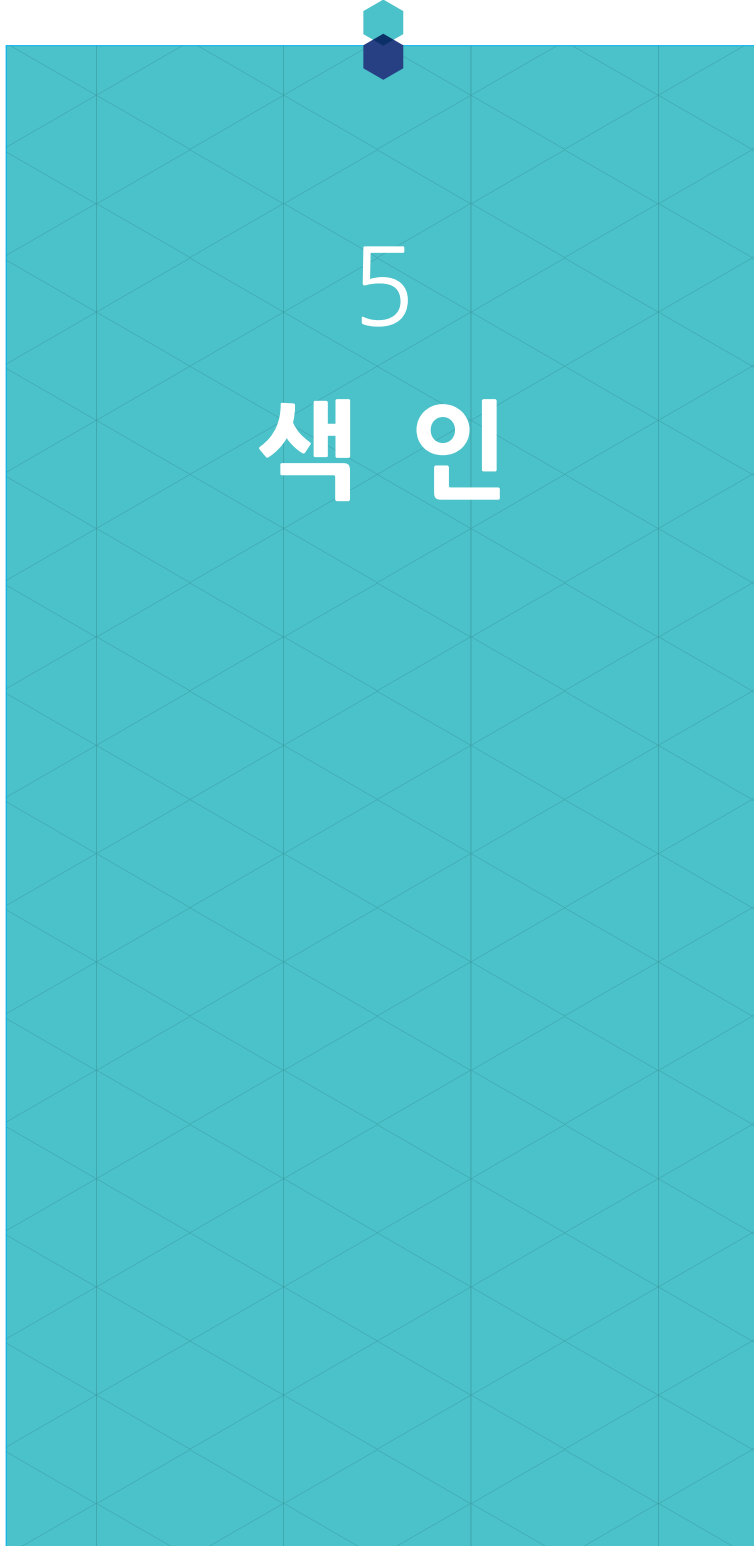
지역 주간지 (222)	경남(31)	거제신문, 거제중앙신문, 거창신문, 거창韓신문, 경남여성신문, 고성미래신문, 고성신문, 김해뉴스, 남해시대, 남해신문, 뉴스사천, 밀양시민신문, 밀양신문, 산청시대, 새거제신문, 서경신문, 양산시민신문, 양산신문, 의령신문, 주간아름신문, 주간동영뉴스, 주간한산신문, 주간함양, 하동신문, 한려투데이, 함안군민신문, 함안뉴스, The 함안신문, 함안이라신문, 함양신문, 함천대야신문
	광주/전남(35)	강진우리신문, 고흥타임즈, 광양신문, 굿뉴스피플, 나주투데이, 담양뉴스, 담양신문, 담양신문, 더페스트뉴스신문사, 목포시민신문, 목포타임즈, 목포투데이, 무안신문, 시민의소리, 여수뉴스타임즈, 여수신문, 영광2, 영광신문, 영암신문, 예향진도신문, 완도신문, 우리군민신문, 장성군민신문, 전남저널, 전남중앙신문, 전남희망신문, 주간 강진신문, 주간 나주신문, 주간 장흥신문, 주간 함평신문, 해남군민신문, 해남우리신문, 호남타임즈, 화순군민신문, 화순일보
	전북(19)	고창신문, 군산뉴스, 군산미래신문, 김제시민의신문, 김제신문, 남원시민신문, 부안독립신문, 부안저널, 순창신문, 시사전북, 완주전주신문, 익산신문, 익산투데이, 전북신문고, 정읍신문, 주간군산신문, 주간소통신문, 진안신문, 주간해피데이
	제주(1)	서귀포신문

3. 월간지 : 17개

중앙 월간지 (16)	종합지(11)	경제풍월, 뉴스메이커, 서울21, 시사뉴스타임, 시사뉴스피플, 시사매거진, 신동아, 월간조선, 월간중앙, 폴리피플, ANDA
	여성지(5)	여성동아, 여성조선, 여성중앙, 우먼센스, 주부생활
지역 월간지(1)		전라도닷컴

4. 뉴스통신 : 9개

뉴스통신(9)	국제뉴스, 뉴시스, 연합뉴스, 뉴스1코리아, 서울뉴스통신, 아시아뉴스통신, 포커스뉴스, KNS뉴스통신, NSP뉴스통신
---------	---



1. 결정유형별

구분	결정 유형	의결 번호	매체명	면수
자체심의	경고	2017대선-자심4	미래한국	75
	경고	2017대선-자심8	주간한국	89
	주의	2017대선-자심1	대구일보	94
	주의	2017대선-자심5	경남매일	98
	주의	2017대선-자심9	조선일보	101
	권고	2017대선-자심2	경향신문	102
	권고	2017대선-자심3	주간경향	103
	권고	2017대선-자심6	시민일보	104
	권고	2017대선-자심7	영남일보	107

구분	결정 유형	의결 번호	시정요구인 / 매체명	면수
시정요구심의	경 고	2017대선-시심1	문재인 / 중앙일보	109

2. 언론사별

구분	언론 사명	결정 유형	의결 번호	면수
자체심의	경남매일	주의	2017대선-자심5	98
	경향신문	권고	2017대선-자심2	102
	대구일보	주의	2017대선-자심1	94
	미래한국	경고	2017대선-자심4	75
	시민일보	권고	2017대선-자심6	104
	영남일보	권고	2017대선-자심7	107
	조선일보	주의	2017대선-자심9	101
	주간경향	권고	2017대선-자심3	103
	주간한국	경고	2017대선-자심8	89

구분	매체명 / 시정요구인	결정 유형	의결 번호	면수
시정요구심의	중앙일보 / 문재인	경고	2017대선-시심1	109